

『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0월 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10월 9일

제1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석 태 룡

나. 제안이유

- 구미 원평구역 주택단지는 대부분이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고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당해구역 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,
- 자력으로서는 주거환경개선이 불가능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 계획 입안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도심 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□ 정비사업의 명칭 :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

□ 정비구역 및 면적

○ 위 치 : 구미시 원평동 24번지 일원

○ 면 적 : 31,445m²

□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

○ 용도지역 : 일반상업지역, 준주거지역

○ 주된용도 :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

○ 계획세대수 : 752세대(2,106명)

○ 건 폐 율 : 45.72%

○ 용 적 륜 : 454.27%

라. 참고사항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○ 원평구역 주택단지는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 시설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

○ 본 사업은 원평동 24번지 일원으로 면적 31,445m²(택지 23,592m², 공공시설부지 7,853m²)에 공동주택(30~34층)을 건립할 계획인 바

○ 기 추진 중인 “원평2동 재개발사업”과 인접지역이므로 동선
및 스카이라인 등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이
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찬성의견 채택

붙 임 : 의견서 1부

『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의 건 서

□ 사 업 개 요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
2. 위 치 : 구미시 원평동 24번지 일원
3. 정비구역 면적 : 31,445m²
4.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
 - 용도지역 : 일반상업지역, 준주거지역
 - 주된 용도 :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
 - 계획세대수 : 752세대(2,106명)
 - 건 폐 율 : 45.72%
 - 용 적 률 : 454.72%
5. 추진배경 : 주민제안에 의한 사업신청

□ 주 요 내 용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·사업 추진 시
- 기 추진 중인 “원평2동 재개발사업”과 인접지역이므로 동선, 도로율 및 스카이라인 등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, 정비기반 시설 확보를 통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심 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추진하기 바람